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031호

나. 발 의 자 : 김기덕 의원(찬성자 12명)

다. 발의일자 : 2024년 8월 12일

라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2. 제안이유

○ 그동안 서울특별시 체육회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조례상, 위탁 등의 별도 조항이 부재하여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모사업 방식으로 위탁사업을 추진해왔음.

○ 올해 초「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'24.2.)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 및 수의계약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의 근거가 마련됨.

○ 이에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체육회 등의 시설 운영 시 대부 및 수의계약 등 위탁 등의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한 보다 시민 중심의 질적인 체육진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3. 주요내용

○ 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수의계약 등으로 위탁할 수 있는 별도 조항 신설(안 제18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별첨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동 개정안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 및 수의계약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개정의 타당성

○ 동 조례안의 관계법령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 조항이 “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,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” 개정되어 2024년 9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.

<관련법령>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 3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,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의 내용·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○ 다만,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“특정기관에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도록 특례를 두는 경우에는 타 기관 ·단체의 공익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지역주민의 동등한 이용기회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,

적용대상으로 규정한 ‘지방체육회 사업’은 법률효력이 발생하는 사업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범위가 불확실하여,

공유재산 관리 처분 시 그 대상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공유재산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감면 등의 특례 적용이 광범위하게 행사되어 지방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,

공유재산 관리·처분에 대해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기보다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”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
또한 그 밖에 ‘지방체육회는 운영비와 사무공간의 대부분을 지방비와 공유재산에 의존하여 국유재산 특례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다는’ 우려의 의견도 있었음.

○ 상위법령 심의과정에 논란은 있었으나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,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기하여 근거를 더욱 견고히 하는 동 조례안은

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○ 안 제18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‘공유재산를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’ 제1항에 규정함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**제18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**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공유재산의 위탁 운영 대상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있으며 독립법인으로 설립(2021.5.)된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 대상이 될 것임.[1)]

- 서울시체육회 2024년도 총 예산은 713억원으로 시보조금이 약 72%인 515억원을 차지하며 그 외 국비(55억, 72%), 자체기금(102억, 14%) 등이 포함됨. 시보조금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재정

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에서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서울특별시체육회 법인이 설립(2021.5.)되었으며 현재 민선2기(2023.2~2027.2.)가 출범된 상황임.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로 법인화되지 않았으며 서울특별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운영중임.

자립도가 매우 낮으며 자체 수익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임.

○ 서울특별시체육회는 각종 체육시설 수탁 공모 및 수탁시설 운영 업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체육시설팀(임시기구/TF팀)을 신설(2024.2.)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임.

- 체육회가 관리 위탁할 공유재산은 특정할 수 없으나 시립체육시설 중 민간위탁시설은 잠실야구장(LG·두산), 효창운동장(서울시축구협회), 목동빙상장(와이키키 신사점), 산악문화체험센터(박영석산악문화진흥회·마포구체육회)가 있으며, 그 밖에 신규 건립 중(문정역사 체육시설, 어울림체육센터)인 체육시설과 구립 체육시설이 다수 있음.

○ 같은 조 제2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·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함. 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(사용허가기간)[2]를 준용한 것임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	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·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(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)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○ 같은 조 제3항은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경우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를 준용한 것임. 그 밖에 기간 갱신

2) 제21조(사용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

등은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함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	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,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○ 또한 동 조례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, 조례를 따르도록 함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	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,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
○ 향후 체육회가 체육시설에 대한 경영 전문성이 담보된다면 법인화된 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, 시민 대상 체육진흥 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전문위원	임창균(2180-8113)	입법조사관	박지혜(2180-8115)

의안번호 2031	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김기덕 의원 (문화체육관광위원회)	2024. 8. 12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주요내용	〈제안이유〉 ○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, 서울시체육회 등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, 수의 위탁계약 등에 필요한 근거 마련 〈주요 입법 요지〉 ○ 市체육회·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,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8조의2제1항) ○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 기간은 5년 이내이며, 관련법령에 따라 갱신(안 제18조의2제2항) ○ 수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, 관련법령에 따라 갱신(안 제18조의2제3항) ○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름(안 제18조의2제4항)
추진경과	○ 2024. 8. 12. 조례안 발의(발의자 : 김기덕 의원) - (찬성자) 김규남, 김원중, 아이수루, 유정희, 이종환 의원 등 12명
부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( ) / 부결( ) / 보류( )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'24.3.26. 개정된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은 지방체육회·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, 수의에 의한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○ 위 개정법률 시행('24.9.27)에 따라,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 등을 위한 조례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
대응방안	○ 해당없음

담당부서	체육정책과	팀장	남규하(☎2133-2677)	담당	방준흠(☎2133-2678)